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3400 제출연월일: 2024. 8. 30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세무사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세무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하여 세무사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.

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세무사 명의 등을 빌려준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만 몰수·추징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사 명의 등을 빌린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와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까지 몰수·추징하려는 것임.

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 및 제12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2(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세무사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제12조의7(광고) ① 세무사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(이하 "세무사등"이라 한다)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, 경력, 주요취급 업무, 업무 실적,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·잡지·방송·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. ②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세무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
 - 2.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
 - 3.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

- 오도(誤導)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
- 4.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
- 5. 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
- 6.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
- 7.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
-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의15제1항제5호 중 "제16조의5제4항"을 "제12조의7, 제16조의5 제4항"으로 한다.
- 제19조의15 중 "제12조,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"를 "제7조의2, 제12조,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"로 한다.
- 제20조의2제6항 전단 중 "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"을 "제6조, 제7조, 제7조의2 및 제8조를"로 한다.
-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"을 "제6조, 제7조, 제7조의2 및 제8조"로 한다.

제25조 본문 중 "제12조의3(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"를 "제22조의 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7조의2(결격사유 확인을 위한
	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) ① 기
	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
	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
	록된 세무사가 제4조 각 호의
	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
	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
	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
	회를 요청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
	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
	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
	<u>다.</u>
<u><신 설></u>	제12조의7(광고) ① 세무사 또는
	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
	인(이하 "세무사등"이라 한다)
	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,
	<u> 경력, 주요 취급 업무, 업무 실</u>
	적,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
	필요한 사항을 신문・잡지・방
	송・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
	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.
	②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
	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

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세무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
- 2.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
- 3.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소비자를 오도(誤導)하거나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
- 4.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 록 하는 내용의 광고
- 5. 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 용의 광고
- 6.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
- 7.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
-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,

제16조의15(등록취소 등) ① 기획 저 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 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~ 4. (생 략)
- 5. 제16조의5제4항 · 제5항, 제16 조의7, 제16조의8, 제16조의9 제1항, 제16조의11 또는 제16 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, 제12조,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, 제15조 및 제19조의14를 위반한 경우

② ~ ⑤ (생 략)

제19조의15(준용규정) 외국세무자 저 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 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제1호, 같은 조 제

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령으로 정한다.
세16조의15(등록취소 등) ①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제12조의7, 제16조의5제4항</u> -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세19조의15(준용규정)

4항, 제12조, 제12조의2부터 제12 조의5까지, 제13조제1항, 제14 조, 제14조의2, 제15조, 제16조 의2,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, 제16조의4제3항, 제16조 의7, 제16조의10, 제16조의11, 제16조의13, 제16조의15제2항부 터 제5항까지, 제17조, 제18조제 2항, 제19조, 제20조 및 제24조 를 준용한다.

- 제20조의2(세무대리업무 등록) ① ~ ⑤ (생 략)
 -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<u>제</u>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"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"는 "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"로 본다.
- 제20조의3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·② (생 략)
 - ③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

	제7조의2, 제12조, 제12조
	의2부터 제12조의5까지
제	20조의2(세무대리업무 등록) ①
	~ ⑤ (생 략)
	⑥ <u>제</u>
	6조, 제7조, 제7조의2 및 제8조
	<u> 를</u>
제	20조의3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
	위탁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	③ 제6조, 제7조, 제7조의2 및
	<u>제8조</u>

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 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제25조(몰수・추징) 제12조의3(제 제25조(몰수・추징) 제22조의2제3 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)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 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 익은 몰수한다. 다만, 이를 몰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.